



## 제5호 청렴주의보 발령

- 클린신고센터 안내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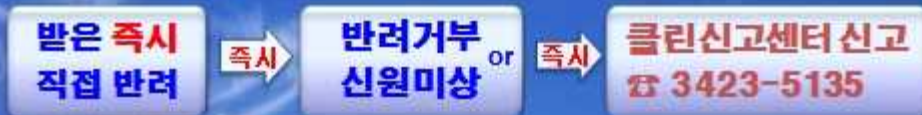
### 1. 클린신고란 ?

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클린 신고센터에 **즉시** 신고함으로써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청렴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함

### 2. 신고 대상

- 직무 관련, 직·간접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
- 본인 부재 시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반려가 어려운 경우

### 3. 신고 방법



- \* 금품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, 보관 중 금품 수령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처분대상
- \* 야간 or 주말 수령 : 담당자(조준용 : 010-2791-9875) or 팀장(홍윤명 : 010-6816-5335)에게 연락조치

### 4. 신고 예외 대상

- 회의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or 통신·교통 등 편의제공
- 불특정 대상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등

### 5. 위반 사례

○ 2013. 4. 8. 우리구 ◇◇ 과 사무실에서 ◇◇팀장이 직무관련 업체가 건넨 150만원 현금 봉투를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 암행반에 적발당함

☞ ◇◇팀장은,

- 1)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
- 2) 지방공무원법 제53조(청렴의 의무), 제55조(품위유지의 의무) 위반으로 중징계(정직3월) 및 '150만원징계부과금 부과